

# 영등포구보

## 고 시

- 제2011-50호 관리처분 계획인가 ..... 1
- 제2011-59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..... 3

## 인사발령

- 2011. 8. 16 일자 ..... 4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<<http://www.ydp.go.kr>>(내사랑영등포→영등포행정→영등포구보)에  
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◎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☎(02)2670-7554 / 전송 : (02)2670-3581
- ◎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(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,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)
- ◎ 구보게재접수는 D-3일(월요일)까지 접수

D-3접수	→	D-2일 편집 및 교정	→	D-1일 인쇄 및 제책	→	D일 보급 및 배포
-------	---	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



고 시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-50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5호(2007.11.2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47호(2009.9.10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09-65호(2009.12.3)로 사업시행인가된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1년 8월 18일  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관리처분 계획인가

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주택재개발사업,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. 위치 및 면적 :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29-94번지 일대(50,759.30㎡)
- 3. 사업시행자 :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종근  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96-26호 3층)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1년 08월 18일
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건축계획

건축면적(㎡)	건축연면적(㎡)			건폐율(%)	용적율(%)
	계	지상	지하		
7,073.81	134,054.78	91,099.38	42,995.40	17.79%	228.90%

2) 토지이용계획

계(㎡)	분양대지(㎡)		정비기반시설(㎡)				
	분양 및 임대아파트 (근린생활시설 포함)	소계	도로	공원	녹지	도서관	소계
50,759.3	39,762.60	39,762.60	6,158	1,929.8	608.6	2,300.3	10,996.7

## 나. 권리자별 관리처분

대상자	분 양				청산	수용	협의매수
	소계	공동주택	근린생활시설	주택 및 상가			
427인	301인	297인	0인	4인	116인	8인	2인

##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포함)

구분	용도폐지			신설				
	계	도로	주차장	계	도로	공원	녹지	도서관
규모(㎡)	3,767	2,881	886	10,996.7	6,158	1929.8	608.6	2,300.3

## 라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근린생활시설 (㎡)	
	계	39A	39B	49	59B	59A	84	114	대지 면적	건축 연면적
계	836	56	5	71	19	101	335	249	389.22	1,248.04
조합원	301					19	224	58		
세입자 (임대)	151	56	5	71	19					
보류시설	4					2	2			
일반분양	380					80	109	191		

## 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

- 2011년 8월 ~ 2012년 6월

6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(02-2670-3527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-59호

##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1년 8월 18일  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- 아 래 -

대상시설			지정 사유	지정 등급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명	소재지	소유자 (점유자·관리자)				
일반건축물 (주택)	영등포구 신길동2587번지 외 1필지	김 병 환	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·관리	E급	-월2회이상 안전점검 -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-위험요인해소를 위한 장·단기 해소계획 수립 추진	
일반건축물 (주택-답장)	영등포구 신길동 3183-128번지	이 성 수	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·관리	E급		

<b>인사발령</b>
-------------

###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

<발령번호 : 제125호>

일련 번호	성 명	제 청			현 직		
		부 서	직위(호봉)	직 급	부서	직위	직 급
1	유 희 원 (79.07.24)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1.08.16부터 2012.08.15까지)			행정국		지방약무 주사보
2	김 민 경 (77.10.08)	가정복지과 근무를 명함			의약과		지방행정 서기보

(발령연월일 : 2011년 08월 16일자)